KOSHA GUIDE

C - 3 - 2011

- (4) 이동식 기계기구 등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정 상적인 장비로 교체하거나 정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(5) 위험기계·기구의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제품 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- (6) 런칭 거더에 설치하는 작업발판, 통로,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은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.
- (7) 야간작업을 위하여 전등 등 조명기구를 가설트러스 등 강재 구조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연재를 설치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(8) 런칭거더 상부 및 노즈에는 연속된 작업발판과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런칭거더에 각 부분에 설치된 고정형 승강 사다리에는 등받이 울을 설치하도록 한다.
- (10) 다음 개구부에는 추락재해방지를 위하여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(가) 노즈 이음부
 - (나) 트러스(Truss) 노즈 개구부
 - (다) 노즈 상단 개구부
 - (라) 노즈 이음부 상단 개구부 등
- (11) 다음 개구부에는 추락재해방지를 위하야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(가) 써포트(Support) 측면 작업발판 단부
 - (나) 고정형 승강계단 단부